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09
----------	-----

제출년월일 : 1994. 11.

제출자 : 속초시장

1. 제안사유

- 속초시종합경기장이 시민의 체육활성 도모와 체육공간 제공으로 하여금 스포츠 붐을 조성하고 중앙경기 단체의 훈련장으로 제공하여 지방체육활성화에 기여하는등 효율적으로 체육시설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저 함.

2. 주요골자

-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1994. 10. 24. 입법 예고 결과 보고
- 1994. 11. 10. 시정조정 위원회 부의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종합경기장 체육시설(이하 " 체육시설 " 이라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 등을 말한다.
2. "부대시설등"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관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13조제1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사용자를 제외한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습,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30인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8.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9.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0. "학생"이라 함은 만 13세이상 만 18세이하인 자중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만 7세이상 만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2.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이상 만19세이하인 자중 제9호의 군인과 제10호의 학생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13. "어른"이라 함은 만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만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취소·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여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 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경우 2인이상 같은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시장이 정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기 타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할 때

3.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경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을 위한 체육 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수 없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기타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8조(사용기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다음 구분을 각각 1회로 한다.

구 분	하 계 (3월 ~ 10월)	동 계 (11월~다음해 2월)
조 기	06 : 00 ~ 08 : 00	07 : 00 ~ 09 : 00
주 간	08 : 00 ~ 18 : 00	09 : 00 ~ 17 : 00
야 간	18 : 00 ~ 22 : 00	17 : 00 ~ 21 : 00

제9조(사용료) ①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일수가 2일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1회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시간을 전부사용한 것으로 보아 1회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중계방송 기본액, 상행위등 사용료및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각각 별표2, 별표3, 별표4와 같다.

제10조(초과 사용료)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5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대관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조 행사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감면할 수 있다.

2. 속초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에 대하여는 기본시설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3. 강원도 및 속초시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중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속초교육청, 강원도 체육회, 속초시체육회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4. 기타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 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등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양도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입장권 등) ①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에 입장하려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이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공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 방송, 통신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경로대상자

②제1항에 의한 입장료의 요금은 사용자가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입장료는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입장권은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는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잔표와 수표가 끝난 입장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⑦입장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1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질환이 있는 자 또는 술에 만취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등을 휴대한 자
3.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18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운영위원회) ①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 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의2(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부위원장 각1인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시의 관계 실, 과장과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 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20조(휴관)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계 및 동계 각30일의 범위내에서 시설개보수와 기기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종합경기장 사용료 요율표

1. 경기장사용료 기본액

(단위 : 원)

구분 경기장별	사용목적	사 용 료	비 고
육상경기장 (트랙)	체육경기	(45,000) 30,000	-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 - 축구경기는 1계임을 원칙 (초과게임당 50% 가산) ()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임.
	체육이외	(150,000) 100,000	
잔디그라운드	체육경기	(105,000) 70,000	
	체육이외	(150,000) 100,000	

2. 연습사용료 기본액

(단위 : 원)

경기장별	이 용 구 분	기본요금	비 고
육 상 경 기 장	○ 개 인	200	2 시간당
	○ 단 체 : 팀 당		
	· 트 랙	3.000	"
	· 잔디그라운드	20.000	"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품 명 별	구분	단위수량	사용료액	비 고
전 기 요 금	1 일		관허요금	기본료(10,000원)+월수 용요금×일수/30 +사용 전기류 고시가격
샤 위	1 회	1인 1회	300	
마 이 크	1 일		5,000	
음 향 시 설	"		30,000	
트 레 이 닝 장	1인1회	일 반 학 생 회원 (월)	500 300 일반 : 5,000 학생 : 3,000	(어른, 청소년, 군인) (초.중.고생)
냉 방 료	1 회		관허요금 (실비)	
난 방 료	"		"	
경 기 장 조 명	"		관허요금	기본료(30,000원) + 월수용요금×일수/30 +사용전기류 고시가격
전광판,스코어판	1 회		기본료10,000 1게임당2,000	
접 의 자 대 여	"	개 당	100	
책 상	"	"	300	
I 탁 자	"	"	1,000	

【 별표 2 】

중 제 방 송 기 본 액

(단위 : 원)

종 별	구 분	단위	중계 방송료		비 고
			T V	라디오	
체육행사.경기	국제경기	1회	50,000	25,000	○ 중계방송료는 중계를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국내경기		20,000	10,000	
공연등 행사	국 외	"	50,000	25,000	
	국 내	"	20,000	10,000	
체 육 행 사 이 외		"	20,000	10,000	
영 화 촬 영		"	30,000		
경 기 촬 영		"	20,000		
○ 녹 화 ○ 라 디 오 녹 음			T V : 중계방송의 반액 라디오: 중계방송의 반액		

【 별표 3 】

상행위 등 사용료

(단위 : 원)

종 별	사 용 료 액	비 고
1. 프로그램 판매행위	장내 반입 부수가격 총액의 20퍼센트 상당액	장당가격 × 부수
2. 광고문 게시 (10m×1m이내)	· 1년 : 500,000원 · 5일 이내 : 50,000원 · 1일 초과 : 10,000원	시설사용허가 기간에 한함 (1장당)
3. 기타 선전광고 행위 (경기장, 체육관등의 상업용 홍보간판 등)	소 형(3.5m'이하) : 30,000원 중 형(3.5m'초과 -5m'이하) : 50,000원 대 형(5m'초과 -12m'이하) : 150,000원 초대형(12m'초과): 200,000원	시설사용허가 시간에 한함 (1개당)
4. 애드바룬 및 유사게시 물에 의한 광고 행위	5,000원	1일(개당)

【 별표 4 】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

구 분	사 용 료 징 수
일 반 경 기	관람수입 총액의 2할
기타사용 (프로경기, 행사등)	관람수입 총액의 2.5할

【 별표 5 】

체육시설, 부대시설 초과사용시 사용료징수액

구 분	초 과 사 용 료 징 수 액
전 용 사 용 시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할 가산
연 습 사 용 시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5할 가산